

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3호의4서식] <신설 2023. 8. 22.>

징수유예
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 **신청서**
 징수유예 기간 연장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
------	-----	------

신청인 (납부자)	성명	생년월일	사업자등록번호
	주소 (전화번호:)		
	상호 또는 명칭		
	사업장 소재지		
	사업의 종류	종목	

재활용부과금의 내용				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금액
연도(분기)	납부번호	납부기한	금액	
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이유

징수유예(기간 연장)를 받으려는 기간

20 . . .부터 20 . . .까지
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				
횟수	연도(분기)	납부번호	분할납부 기한	분할납부 금액

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,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없 음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	------------

